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4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서삼석 · 이개호 · 김원이
이병진 · 문금주 · 조계원
박지원 · 김동아 · 박수현
위성곤 · 주철현 · 조인철
김영배 · 서미화 · 김영진
윤준병 · 임미애 · 정준호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급식 시장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납품하던 기존 방식에서 가공식품 납품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군납 농축수산물 원재료 공급 물량은 2021년 6만 2천톤에서 2023년 3만 8천톤으로 줄어든 반면, 군납 농축수산물 중 가공식품의 비율은 2021년 45%에서 2023년 70%로 확대되는 등 가공식품 납품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군납 농축수산물의 경우 원산지과 품질, 잔류농약 등의 엄격한 납품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에 가공식품은 HACCP 인증보유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입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이용해 낮은 제조단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수입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납품이 확대되면서 군납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세해 국산 농축수산물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구매와 생산을 장려하며 수입 원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공식품

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될 것.

다만,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산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① ----- ----- ----- -----. ----- ----- ----- ----- ----- ----- ----- ----- ----- ----- -----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u>

② ~ ⑤ (생략)	<u>갖춘 가공식품</u> 가. 「<u>국군조직법</u>」에 따라 <u>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u> <u>공급될 것. 다만, 「군인복</u> <u>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u> <u>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u> <u>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u> <u>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시설에 공급되는 경</u> <u>우는 제외한다.</u> 나. 「<u>식품산업진흥법</u>」 제22 <u>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u> <u>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산으</u> <u>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것</u> ② ~ ⑤ (현행과 같음)
-------------------	--